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제 회)	

산 립 자 원 의 조 성 및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지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산림청장이 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인증 및 인증표시와 인증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5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기준,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요건 및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을 할 수 있는 종묘생산업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기준 마련 (안 제48조의8 신설)

- 1)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을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조사자료 관리의 적정성 등으로 정함.

- 2)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기관에 평가일시, 평가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일 20일 전까지 알리도록 함.

나.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요건(안 제48조의12 신설)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요건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관리인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자생식물 종자의 수집·증식·저장 및 생산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담 부서가 있을 것, 3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를 보유할 것으로 정함.

*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

다.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안 제48조의13 신설)

- 1)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을 할 수 있는 종묘생산업자의 요건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보유할 것, 330제곱미터 이상의 간이온실을 보유할 것으로 정함.
- 2)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가 가뭄해·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묘목생산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가뭄해·수해(水害)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라.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업무에 대한 권한의 위임(안 제71조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하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 이외의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함.

마. 산림복원지 모니터링 기관 및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에 대한 시정
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3 제2호 사목 및 아목)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산림청
장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및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에 대한 산림청장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
료 부과기준을 각각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1. ~ 3.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유한 자(용기묘 생산에 한한다)”를 “보유한 자[용기묘(容器苗) 생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48조의7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부터 제5항”을 “제4항부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의8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림복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를 위한 장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복원 장비를 갖출 것

3. 산림복원 관련 전담 부서가 있을 것

제48조의8부터 제48조의10까지를 각각 제48조의9부터 제48조의11까지로 하고, 제48조의8, 제48조의12 및 제48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8(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① 법 제42조의8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고, 호와 같다.

1.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법 제42조의8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2.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조사자료 관리의 적정성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운영실적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기관에 평가일시, 평가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일 2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모니터링 기관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링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운영실적의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니터링 기관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운영실적의 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모니터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8조의12(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수목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2. 법 제42조의1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부서가 있을 것
3. 3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보유할 것

② 법 제42조의12제5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2. 자생식물 종자 수집 및 생산 실적
 3. 온실, 포지 등 시설 관리의 적정성
 4.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실태
 5. 법 제42조의12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운영실적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제48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

지를 준용한다.

제48조의13(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① 법 제42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묘생산업자”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보유할 것
2. 330제곱미터 이상의 간이온실을 보유할 것(용기묘를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71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42조의14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만 해당한다)의 인증 및 법 제42조의15에 따른 인증취소에 관한 권한

⑤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14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 이외의 종자만 해당한다)의 인증 및 법 제42조의15에 따른 인증취소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제7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1조제6항”을 “제71조제7항”으로 한

다.

별표 3 제2호사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사. 법 제42조의8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79조 제1항제4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아. 법 제42조의12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79조 제1항제5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부 칙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 략) 2. 5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을 말하며, 임차포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한 자 3. 간이온실을 <u>보유한 자(용기묘 생산에 한한다)</u> ② ~ ④ (생 략) 제48조의7(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① (생 략) <u><신 설></u>	제14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 ----- --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 <u>보유한 자[용기묘(容器苗) 생산에 한정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의7(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2조의8제2항제3호에서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u>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u>산림복원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명 이상</u>

②・③ (생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원사업이 종료된 후 세 번째 되는 해 또는 네 번째 되는 해에 추가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1. ~ 4. (생략)

⑤ (생략)

⑥ 모니터링 기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복원지

을 보유할 것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
자원의 조사를 위한 장비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복원 장비를 갖추 것

3. 산림복원 관련 전담 부서가
있을 것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

1. ~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 제4항부터
제6항-----

-----.

⑧ -----
---- 제7항-----

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

⑨ ----- 제8항-----

-----.

제48조의8(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① 법 제42조의8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법 제42조의8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2.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조사자료 관리의 적정성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운영실적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기관에 평가일시, 평가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일 2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모니터링 기관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48조의8 ~ 제48조의10 (생 략) <신 설>	<u>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니터 링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운영실적의 평가를 실시하 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니터링 기관에 추가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u> <u>⑤ 산림청장은 운영실적의 평가 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모 니터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통보하기 전 에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의견 을 들을 수 있다.</u> 제48조의9 ~ 제48조의11 (현행 제48조의8부터 제48조의10까지 와 같음) 제48조의12(자생식물 종자 공급센 터의 지정 등) ① 법 제42조의1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수 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수목원으로
--	---

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
항에 따른 전문관리인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2. 법 제42조의1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부서가
있을 것

3. 3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보유할 것

② 법 제42조의12제5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운영실
적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2. 자생식물 종자 수집 및 생산
실적

3. 온실, 포지 등 시설 관리의
적정성

4.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실태

5. 법 제42조의12제2항제4호
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삭 제
 ②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운영실
적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제48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8조의13(자생식물 종자의 생산
 대행 및 피해보상) ① 법 제42
 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
 묘생산업자”란 제12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보유할 것
 2. 330제곱미터 이상의 간이온
 실을 보유할 것(용기묘를 생
 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 게
위임한다.

1. ~ 7. (생 략)

<신 설>

8. (생 략)

③ · ④ (생 략)

<신 설>

⑤ ~ ⑦ (생 략)

제7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7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를 포함한다), 지방산림청장(제
71조제6항에 따라 지방산림청

-----.

1.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42조의14에 따른 자생
식물 종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
림용 종자만 해당한다)의 인
증 및 법 제42조의15에 따른
인증취소에 관한 권한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14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
하는 산림용 종자 이외의 종자
만 해당한다)의 인증 및 법 제42
조의15에 따른 인증취소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
한다.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제7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
71조제7항-----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략)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연 락 처	(042) 481 - 8812